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12월 19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중소벤처
기업부장관 이영

●대통령령 제34012호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·고시한 사업(이하 “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(이하 “법령규제목록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1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
 2.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(이하 “규제자유특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

제44조제3항제9호 중 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(이하 “규제자유특구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규제자유특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2(국제협력 등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.

1.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
2.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
3. 해외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등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